**GME 카드 업무처리 대행계약 부속협약서**

주식회사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이하 "GME"라 한다)과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한다)는 “GME 카드 업무처리 대행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 한다.)” 제9조(가맹점 대금정산) 및 제13조의 [붙임] 대행수수료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부속협약서(이하 “본 부속협약(서)”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부속협약은 “GME”가 회원에게 발급하고 관리하는 “GME 카드” 업무 중 일부를 “비씨카드”가 대행함에 있어 “GME”가 “비씨카드”에게 지급해야 하는 가맹점 대금(본 계약서 제9조 제2항에 따른 ‘승인금액에서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지급 주기, 대행수수료 및 보증보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점 대금 정산)** ① “GME”가 “비씨카드”에 지급하는 가맹점 대금은 협의된 정산일자인 매입일(365일 기준) + 1일(영업일) 09시30분까지 “비씨카드”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명시된 시점까지 처리가 불분명할 경우, 양 당사자간 사전 합의를 통해 처리시점을 공문으로 정한다.

**제3조(대행수수료 및 정산)** ① “본 계약서” ‘[붙임] 대행수수료 정산’ 제1조 대행수수료 항목 및 용어 정의의 제3항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위임 업무 항목이나 비용 및 추가 사항 등”을 포함한 전체 수수료 기준은 본 부속협약서의 [붙임]과 같이 정한다.

② 제1항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의 내용은 “본 계약서” 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4조 (보증보험)** “GME”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맞추어 “본 계약서” 제9조 제2항의 대금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증권을 “비씨카드”에 제공하여야 한다. 보증보험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비씨카드”는 “GME”의 카드 업무대행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① 보증보험 계약 내용

가. 보증보험은 서비스 개시 전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보증기간은 “본 계약서”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로 한다.

나. 아래의 보증보험 내용은 양 당사자가 매입데이터 전송과 정산업무를 영업일이 아닌 365일 기준으로 수행하되, “D(매입일) + 1일(영업일) 09시 30분”에 정산이 완료된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다. 서비스 개시일이 해당월의 10일 이내일 경우 해당월을 1월차로 계상하되, 서비스개시일이 해당월의 11일 이후인 경우에는 익월부터 1월차로 계상한다.

라. 보증액은 “비씨카드”가 “GME 카드”의 추정 발급좌수 및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준월 매입액에 대하여 20으로 나눈 다음 5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마. 최초 보증보험 체결액(보증액)은 양 당사자가 추정한 내용을 준용하여 6개월차 추정 매입액인 4.2억원으로 한다. (개시 전)

바. “GME”는 최초 보증보험증권 교부 후, 잔여 계약기간 중 6개월마다 총 5차례(1~5차) 표1의 스케쥴 및 금액 규모대로 보증금액을 증액하고, 이에 관한 보증보험증권을 “비씨카드”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양 당사자는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변경없이 표1에 정한 바에 따른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하기로 하며, 6개월 경과 후부터 동조 제2항에 따라 보증액 재산정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

표1 <보증보험 납입 스케쥴- D(매입일) + 1일(영업일) 09시 30분 기준>

**보증보험 스케쥴**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개시 전**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적용기간 | 1월차~  6월차 | 7월차~  12월차 | 13월차~  18월차 | 19월차~  24월차 | 25월차~  30월차 | 31개월차~  36개월차 |
| 적용 기간별  종료 월  매입 추정액 | **11.7억** | **32.9억** | **51.6억** | **69.2억** | **91.8억** | **113억** |
| 보증 액 | **2.9억** | **5.7억** | **8.6억** | **11.3억** | **14.3억** | **17.1억** |
| 증액  필요액  (변동가능) |  | **2.7억** | **2.9억** | **2.75억** | **2.92억** | **2.76억** |
| 증액 기간  (1달간) | 사업개시 전 | 6월차 | 12월차 | 18월차 | 24월차 | 30월차 |
| 증액 기간  전월  매입 추정액 | - | **21억** | **32.6억** | **43.7억** | **55.3억** | **66.5억** |
| 증액 기간  전월  누적발급좌수 | **-** | **12,500** | **27,500** | **43,750** | **78,125** | **96,275** |

사. “증액필요액”은 각 차수별 보증액에서 전 차수까지 실제로 실행된 누적 보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위 보증보험 납입 스케쥴 상 증액필요액 수치는 실제 매입액을 근거로 산정된 보증보험 증감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② 보증보험의 증액 및 감액 방안

가. 각 증액기간 기준 전월의 실제 발급좌수 및 매입액과 “비씨카드”가 추정한 발급좌수 및 매입금액의 차이가 ± 10%를 초과할 경우, 양 당사자는 보증액 재산정에 따른 보증보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기 보증받은 금액에 대한 감액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일방당사자가 보증보험 증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증액기간 종료일 기준 10영업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다. 양 당사자가 증액기간 내에 보증액 재산정에 대한 절차를 진행한 경우, “GME”는 “비씨카드”에게 증액기간 전월 기준 월매입추정액 대비 실제 월매입액 비율을 제1항 사호에 따른 “증액 필요액”에 곱한 금액 상당의 보증보험증권을 익월 5영업일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라. 각 호의 협의는 공문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보증보험의 전달 및 의무위반에 따른 페널티 조항

가. “GME”는 제1항의 보증보험 납입 스케쥴에 따른 증액기간 말일까지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보증보험증권을 “비씨카드”에 제출해야 한다.

나. “비씨카드”는 기한 내에 “GME”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수취하지 못할 경우, 매 1일 지체시마다 보증받지 못한 금액에 상사법정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페널티 금액을 매입수수료 외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으며, GME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다. “GME”가 가호의 기한이 경과한 후 14일까지 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주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씨카드”는 “본 계약서” 제2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이 경우 “비씨카드”는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④ 보증보험 계약의 변경

가. “GME”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개시 후 재무적 안전성 등 신용도가 투자적격등급 이상으로 평가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에 이르렀을 경우, “비씨카드”에 보증보험 규모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다.

나. “GME”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씨카드”는 신용도를 고려하여 보증액 규모를 재산정하고 부속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보증액 재산정과 관련한 부속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보증액은 본조 제1항 라호에 의한다.

**제5조(기타)** “GME”와 “비씨카드”는 본 부속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거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위임업무 및 대행수수료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 양 당사자간 서면으로 합의 하며 해당 공문은 부속협약서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2023 년 7월 00일

|  |  |
| --- | --- |
| **“GME”**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0**  **주식회사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대 표 이 사 성 종 화 (인)** | **“비씨카드”**  **서울시 중구 을지로 170**  **비 씨 카 드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최 원 석 (인)** |

**[붙임] 대행수수료 정산항목**

| **항목** | **수수료 기준** |
| --- | --- |
|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 - 국세,관세, 고용/산재보험료(건설/벌목업 발생분), 기타(검찰청벌과금 등) 매출 건수 x @300  - 그 외 기타(과태료, 법원인지대 등) 매출 건수 X @330 |
| 4대보험  카드납부 수수료 | - 건강보험/국민연금: 건수 x @260 |
| 국관세 및 4대보험 서차지 가맹점 매출처리수수료 | - 국관세 및 4대보험 서차지 가맹점 매출에 대한 매출액 연동수수료 기준 적용 : 별도 협의  단, 매입 건당 수수료가 5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액 5만원 적용 |
| 택시결제 정산수수료 | - 서울/경기 택시 결제(IC체크)  ㅇ서울택시 : 매출액 x 0.60%  ㅇ경기택시 : 매출액 x 0.70%  ㅇ 사전등록결제 : 매출액 x 0.50% |
| 고속/시외버스 정산수수료 | - 앱/현장창구에서 고속버스/시외버스 결제(IC체크)한 금액에 대해  KSCC 쪽으로 정산수수료 지급  ㅇ 매출액X1.3%(고속버스) / 매출액X1.2%(시외버스) |
| 도로공사 충전 | - 하이플러스 가맹점 충전수수료 ㅇ 가맹점매출액 x 0.85% |
| 기타항목 신판할인 | - 월정산 서비스   ㅇ 원매출없는 취소  ㅇ 취소금액 > 원매출금액 등의 강제처리건 발생 시 처리 |
| FIDO 인증수수료 | - 간편결제에서 FIDO서버를 이용하여 인증 후 결제한 건에 대한 비용  청구  ㅇFIDO인증 성공건수 \* @3.85(VAT포함) |
| 결제서비스 등록 본인인증수수료 | - ISP공인인증서 인증 시도 건수 (업체이원화) ㅇ ㈜한국공인인증서비스(주인증업체)  : 슬라이딩 방식(당사에서 발송한 전체 건수로 단가산정)  \*10만건 이하 : @5.5  \*10만건 ~ 50만건 : @4.4  \*50만건 초과 : @3.3 ㅇ 코스콤(백업인증업체) : @5.5 - 휴대폰 SMS인증 시도 건수 X ＠40.7  ㅇ 단, ‘페이북 로그인 결제’의 경우 휴대폰(SMS) 인증 1건당 복수개 카드 동시 등록이 가능하여, 전체 고객사 인증 발생 건수에 따라 단가(@40.7) 적용한 전체 발생금액에 대해 각 고객사별 전체 카드등록 건수의 비율로 배분 후 원미만 절사하여 청구금액 산정 |
| 소득공제  중계처리수수료 | - 소득공제 데이터는 여신협회를 경유하여 국세청으로 전송 되고 있으며,  여신협회에서 데이터 전송비용을 BC로 청구하는 실비 (연1회 발생)  - @6.5 (VAT포함)  \* 단, 16,923건 이하 전송 시, 최저수수료 110,000원(VAT포함) 청구 |
| 소득공제 데이터  운영 수수료  (데이터 생성 및 전송 등) | - 회원의 연간 카드사용 금액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증빙(국세청 제출용 증빙)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제대상이 되는 카드사용 내역을 집계 및 데이터를 생성하여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서비스 (연 2회 발생)  - 건당 단가 별도협의 |
| 신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 정산 | - 매 반기 신규 영세/중소 우대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소급(환급)을 위해,  고객사에 실비 청구  ㅇ 가맹점수수료 차액(매출 건별) : 변경 전 가맹점수수료 – 우대가맹점  수수료  ㅇ 청구 주기 : 반기 (매년 2월/8월 청구 분) |
| 공카드 및 IC칩 비용 | - 카드 조달 건수 X 조달단가(실비) : 당사 입고 월 기준 익월 정산 |
| 공카드 비용 | - 카드 조달건수 X 조달단가(실비) |
| 본인배송  (공통) | - 특송(서울/수도권) : @1,750  ㅇ 본인지정(옵션) : @330 - 우체국 등기(도서/산간지역) : 신우편번호 @2,720 / 구우편번호 @2,810  ㅇ 본인지정(옵션) : @1,000  \* 배송비용 가격체계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문 전달 예정 |
| 긴급배송 (선택) | - 일반발급(1영업일) : @3,300  ㅇ 본인지정(옵션) : @330 - 일반발급(2영업일) : @2,200  ㅇ 본인지정(옵션) : @330 - 퀵발급 퀵배송 : @3,300원 / 우체국 익일특급 등기 @3,850원  o 동의서징구배송 : @1,000 (옵션 : 동의서징구 배송 업무가 있는  경우만 청구)  \* 배송비용 가격체계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문 전달 예정 |
| 긴급발급 처리 수수료  (공통) | - 긴급발급 요청건당 x @1,680 |
| 수령지변경 수수료 (수작업) (공통) | 수령지 변경(ON-LINE) 접수 x @550 수령지 변경(OFF-LINE) 접수 x @1,100 |
| 반송카드 재배송수수료 | - 특송(인편)배송 : @1,750 - 일반등기배송 : @2,720(우체국 실비) - 동의서배송 : @4,700  \* 배송비용 가격체계 변경 가능성이 있으며, 변경 시 별도 공문 전달 예정 |
| 반송카드 폐기업무 관련 수수료 | - 실적 산정 기준 : 매월 슬라이딩(단일)  o 매월 1일부터 ~ 말일까지 당사에 접수 등록 된 반송(폐기)카드 수  - 반송(폐기)카드수 x 월 슬라이딩(단일)  ㅇ 월 500건 이하 건당 @1,500  ㅇ 월 500건 초과 건당 @1,000  ㅇ 월 1,000건 초과 건당 @700  ㅇ 월 5,000건 초과 건당 @500 |
| DM동봉수수료 | - 쿠폰 동봉 건수 x @20 |
| 기타(캐리어 폐기비용 청구 등) | - 고객사의 카드상품 및 캐리어 내용 변경 시 기 조달했던 인쇄물  (카드캐리어, 안내문)의 폐기에 따른 비용 청구 - 고객사의 인쇄물 조달 요청 시 대행 처리 후 비용 청구 - 기타 비용을 수반하는 업무 발생 시 |
| 소량 공카드 제판비 | - (2,000매 미만 제작하는 MS공카드 유형별) X @150,000  - (1,000매 미만 제작하는 IC공카드 유형별) X @300,000  - (1,000매 이상 3,000매 미만 제작하는 IC공카드 유형별) X @200,000 |
| 카드발급  서비스수수료 | - IC카드발급 서비스수수료 : @950원/건  - 사용등록 안내스티커 부착 : @50원/건  - 1차 IC카드발급 서비스수수료 : @950원/건  - 테스트 카드발급 서비스수수료 : @1,680원/건  - IC 기프트 카드발급 서비스수수료 : @520원/건  - MS 기프트 카드발급 서비스수수료 : @211.9원/건  - 메탈 소재 레이저 카드발급 서비스수수료 : @10,000원/건  - 발급 옵션 서비스수수료  ㅇ 컬러 그래픽 카드발급 서비스수수료 : @528원/건  ㅇ 단색 그래픽 카드발급 서비스수수료 : @200원/건  ㅇ 후면 그래픽 카드발급 서비스수수료 : @28원/건  ㅇ 사진 카드발급 서비스수수료 : @1,621원/건  ㅇ 점자 카드발급 서비스수수료 : @900원/건  ㅇ 메탈 외 소재 레이저 카드발급 서비스수수료 : @1,000/건  ㅇ 사용등록스티커 부착 서비스수수료 : @50원/건  ㅇ MS기프트카드 보안스티커 부착 서비스수수료 : @60원/건  ㅇ 1차카드 50매 단위 포장 서비스수수료 : @1,000원/50건 |
| 별도 안내문 제작비용 | - 캐리어 : 조달건수 X 조달단가(실비)  - 봉투 : 조달건수 X 조달단가(실비) |
| FDS 운영  (취소 건수 포함) | - 정액 : 월1백만원 + (Incoming 신판+현금서비스 매입 건수 \* @105)  + ((국내 신판+현금서비스 매입 건수) \* @0.8) |

**\* 기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수수료에 대한 변경사항은 공문으로 합의한다**